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7
----------	------

제출연월일 2025. 11.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를 규정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항제6호)
-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규정(안 제6조제1호)
- 다. 선정 대리인 신청과 통지 등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장 제29조~제31조)
- 라.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9장 제32조~제33조)
(현행)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변경)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2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3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 마. 불필요한 조문 삭제
- 기존 제31조(시행규칙) 삭제
- 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 규정(부칙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중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삭제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4 (제278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붙임

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제93조의2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0441호, 2025. 10. 14.)

라. 입법예고: 2025. 9. 22. ~ 10. 13.(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하되”를 “않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민원에 대하여는”을 “민원은”으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부분에 대해서는”을 “부분은”으로 한다.

제17조 중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할 경우”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하여야”를 각각 “신청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아니하고”를 각각 “않고”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해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31조를 삭제한다.

제2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1조(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발굴하여야”를 각각 “발굴해야”로 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생략) 1.~5. (생략) <u><신설></u></p> <p>② 제1항 외에 이 <u>조례</u>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u>배치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선정 대리인”이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을 말한다.</p> <p>② ----- <u>조례에서</u> ----- ----- ----- ----- ----- -----.</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 ----- ----- ----- <u>배치해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u>부분에 대해서는</u>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제16조(신청의 취하) ----- ----- ----- ----- <u>부분은</u> ----- -----.</p>
<p>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u>처리함에 있어</u>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u>하여서는 아니</u> 된다.</p>	<p>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 -----<u>처리할 경우</u> ----- ----- ----- <u>해서는 안</u> ----.</p>
<p>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u>아니한다</u>.</p>	<p>제18조(불복 제외대상) ----- ----- ----- ----- -----<u>않는다</u>.</p>
<p>제1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u>신청하여야</u> 한다.</p>	<p>제1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 ----- ----- ----- ----- ----- <u>신청해야</u> -----.</p>

현 행	개 정 안
<p>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 ----- ----- -----<u>신청해야</u> ----- ----- -----.</p>
<p>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p>	<p>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 ----- - <u>통지해야</u> ----.</p>
<p>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p>	<p>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 ----- ----- <u>신청</u> <u>해야</u> -----.</p>
<p>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 ② (생략)</p>	<p>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 ----- ----- ----- -- <u>통지해야</u>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 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 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 토요일은 산입하지 <u>아니한다</u>)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26조(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간) ----- ----- -----<u>않는다</u>----- -----.</p>
<p>제28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 현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u>교육하</u> <u>여야</u> 한다.</p>	<p>제28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 ----- ----- <u>해야</u> -----. ② ----- ----- -----<u>교육해야</u> -----.</p>
<p>제8장 <u>제도개선 과제 발굴</u> <u><신 설></u></p> <p><u><신 설></u></p>	<p>제8장 <u>선정 대리인</u> 제2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u>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u> <u>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u> <u>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u> <u>4조에 따른다.</u></p> <p>제3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u>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u> <u>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u> <u>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u> <u>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대</u> <u>리인 지정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u> <u>에게 제출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p> <p>제31조(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p> <p>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p>

현행	개정안
<p><u>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u></p> <p>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u>발굴하여야</u> 한다.</p> <p>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과제를 <u>발굴하여야</u> 한다.</p> <p><u>제30조 (생략)</u></p> <p><u>제31조 <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32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u></p> <p>① ----- ----- ----- -----<u>발굴해야</u> -----.</p> <p>② ----- ----- ----- -----<u>발굴해야</u> -----.</p> <p><u>제33조 (현행 제30조와 같음)</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p>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제278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해당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세무주사
- 성 명: 차은희
- 연락처: (052)290-3112